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관리묘역의 지정·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0호, 2024. 0. 00. 공포, 0. 00. 시행)됨에 따라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접수 및 관리기관에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훈지청장”을 “보훈지청장(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하며, 이하 “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의3 중 “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”을 “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)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에 따라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(이하 “합동묘역”이라 한다)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<u>보훈지청장</u> 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2조(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훈지청장(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하며, 이하 “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”이라 한다)</u>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3(국가관리묘역의 관리) 합동묘역의 <u>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</u> 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	제2조의3(국가관리묘역의 관리) - ----- <u>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기록해야 한다.

-----.